

#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01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8월 29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제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807호)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818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인체 유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, 서울연구원, 서울기술연구원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을 통합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 바, 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,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- 또한, 현행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는 바, 이에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- 나.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
- 다.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 신설)
- 라.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,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,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
- 마.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3항 신설)

##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, 정책 제안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 조사
2. 미세먼지 발생기작 규명
3. 미세먼지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
4.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및 검증

5. 미세먼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

6.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연구

③ 시장은 미세먼지 연구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(사업소 포함)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,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 <p>〈신설〉</p>  <p>〈신설〉</p>	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, 정책 제언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 조사</li> <li>2. 미세먼지 발생기작 규명</li> <li>3. 미세먼지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</li> <li>4.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및 검증</li> <li>5. 미세먼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언</li> <li>6.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연구</li> </ol> <p>③ 시장은 미세먼지 연구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(사업소 포함)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